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98. 11. 30

나. 제 안 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1998. 12. 1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8차 위원회(1998. 12. 14) 상정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가. 제안이유

○ 시민의 체위향상 및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각종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자가 2인 이상 경합시 허가의 우선순위 규정(안 제3조, 제4조)

○ 체육시설은 시민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함은 물론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개방 또는 사용제한, 입장의 거절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전용사용, 이용사용, 중계방송, 상업사용, 부속시설 사용료로 구분하고, 사용료의 부과기준·납입방법 및 기한을 규정하였으며,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시 초과사용 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20%를 가산하여 납부토록 함(안 제10조, 제12조)

○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허가사용료 외에 관람수입 총액의 20%(프로경기는 25%)를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천시체육회 산하단체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공식경기에 대한 사용료는 10%로 하고, 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는 행사(경기) 종료 후 3일 이내에 정산 납부토록 함(안 제11조)

○ 국가 또는 시의 국경·조 행사, 시장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등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안 제13조)

○ 기이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였으며, 이용 연습사용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함(안 제14조)

○ 사용자가 입장권을 발행하지 아니할 경우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성인인 경우 500원으로 하고, 청소년과 어린이는 200원으로 함(안 제16조)

○ 시장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사용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등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이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함(안 제18조)

○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체육시설 내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설치비용과 철거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함(안 제19조)

○ 사용자는 시장의 동의없이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을 손괴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를 시장에게 배상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나 경기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책임을 짐(안 제20조, 제21조)

○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함(안 제22조, 제23조)

○ 관람권의 현장판매분에 대하여는 체육시설별 매표소에서 판매하며 모든 관람권, 초대권,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함(안 제24조)

○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시장은 체육단체 또는 지방공사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관리 및 운영상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26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시민운동장은 현재 무료로 사용되는데 사용료를 받는다면 시민의 운동 활동에 저해요인이 되지 않는가?	○ 인근 시·군도 받고 있습니다.
○ 종합운동장 완공 후에 조례를 제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는 게 좋지 않나?	○ 완공되기 전에 미리 준비하여 만들어서 하고자 합니다.
○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만 사용료를 받는 것이 좋지 않은가?	○ 영리를 목적으로 할 때는 임대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의안번호	제 76 호
의결년월일	98. 12. 26 (제67회)

제출년월일 : 1998. 11. 30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정이유

○ 시민의 체위향상 및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각종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코자 함.

□ 주요골자

○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자가 2인 이상 경합시 허가의 우선순위 규정(안 제3조, 제4조)

○ 체육시설은 시민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함은 물론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개방 또는 사용제한, 입장의 거절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는 근거마련(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전용사용, 이용사용, 중계방송, 상업사용, 부속시설 사용료로 구분하고, 사용료의 부과기준·납입방법 및 기한을 규정하였으며,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시 초과사용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20%를 가산하여 납부토록 함(안 제10조, 제12조)

○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허가사용료 외에 관람수입 총액의 20%(프로경기는 25%)를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천시체육회 산하단체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공식경기에 대한 사용료는 10%로 하고, 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는 행사(경기) 종료 후 3일 이내에 정산 납부토록 함(안 제11조)

○ 국가 또는 시의 국경·조 행사, 시장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등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안 제13조)

○ 기이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였으며, 이용 연습 사용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함(안 제14조)

○ 사용자가 입장권을 발행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은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을 성인인 경우 500원으로 하고, 청소년과 어린이는 200원으로 함(안 제16조)

○ 시장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사용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등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이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함(안 제18조)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체육시설 내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설치비용과 철거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함(안 제19조)

○ 사용자는 시장의 동의없이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을 손괴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를 시장에게 배상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나 경기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책임을 짐(안 제20조, 제21조)

○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함(안 제22조, 제23조)

○ 관람권의 현장판매분에 대하여는 체육시설별 매표소에서 판매하며, 모든 관람권, 초대권,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함(안 제24조)

○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시장은 체육단체 또는 지방공사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관리 및 운영상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26조)

부천시조례 제 호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라 함은 종합운동장의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 야구장, 체육관, 수영장, 빙상장, 테니스장, 투기체육관, 궁도장, 시민운동장, 육상투척장 등 부천시에서 건립한 모든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기타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각종 경기 및 행사를 위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아 일정기간 체육시설을 전용사용하는 자를, 전용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기본사용료를 말한다.

4. 관람자라 함은 유·무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을 목적으로 기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단체관람이라 함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인솔자에 의하여 20인 이상 동시 관람하는 것을 말한다.

7.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8. 청소년이라 함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과 13세 이상 20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9. 군인이라 함은 하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을 포함한다.

10. 어른이라 함은 20세 이상의 자를 말하며 65세 이상의 자는 경로대상으로 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체육시설의 사용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체육시설 사용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관람료를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체육시설 이용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연습사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 사용자가 2인 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시의 국경·조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진시 등 행사

7. 기타 시장이 허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시설의 개방) ①시장은 체육시설의 개방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단, 개방계획수립 시에는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

월간·일간 주민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 및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 종류별 사용료·이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22조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소관 체육시설의 운영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 제한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개방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시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2. 술에 만취된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5. 기타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9조(사용시간) ①체육시설의 일일 사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하 계	동 계
조 기	05 : 00 - 08 : 00	06 : 00 - 09 : 00
주 간	08 : 00 - 19 : 00	09 : 00 - 18 : 00
야 간	19 : 00 - 23 : 00	18 : 00 - 23 : 0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할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료) ①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에 의하여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전용사용, 이용사용, 중계방송,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 사용 등으로 구분하여 (별표1) 내지 (별표5)와 같다. 단, (별표4)의 규정에 의한 상행위사용료 중 물품대여 및 판매에 대한 사용료 산출에 있어 물품의 종류, 수량의 과다로 매출원가, 판매수량을 부득이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상행위사용자의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다음에 의하여 사용료를 산출할 수 있다.

(연간 입장인원/연간 사용일수×금회 사용일수×1인당 평균구매가격 - 원가)×20/100

③사용료의 납부방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구분에 의하여 시장의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초과사용 및 전기, 난방, 상·하수도요금 등은 행사종료 3일 이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하며, 시설을 연중 계속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익월 10일 이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사용료 외에 관람권 수입총액의 20퍼센트(프로경기는 25퍼센트)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단, 부천시체육회 산하단체 등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여 부천시에 유치하는 전국단위 이상의 공식경기에 대한 사용료는 관람권 수입총액의 10퍼센트로 한다.

②사용자가 발행하는 초청장, 초대권 매출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보며, 관람수입금액의 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단, 사용료는 행사종료 3일 이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가 주관, 주최 또는 후원하는 운동경기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기는 프로경기로 보지 아니한다.

제12조(초과사용료 등) ①사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 시간당 당해 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하여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②사용자가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의 국경·조 행사
2. 시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및 경기
3.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4. 불우청소년, 생활보호대상자, 어린이, 경로자, 군인
5. 등록된 체육 동호인 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행사
6.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13조(사용료의 반환) ①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 연기할 때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반환한다.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정지 시일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4. 우천 등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와 시의 긴박한 사정으로 사용의 취소를 한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②이용 연습사용권 및 관람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용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이용료 및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관람권의 발행) ①관람권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별관람권
2. 일반관람권
3. 군인 및 학생관람권
4. 단체관람권(일반, 군인 또는 학생)
5. 경로우대권
6. 어린이관람권(초등학생)

②체육시설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람권이 없이 입장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가 주관하는 국경·조 행사에 참석하는 자
2. 경기 또는 행사의 주최측 담당 임원, 출전선수, 신문사 및 방송사의 출입기자
3. 시장이 발행하는 출입증을 휴대한 자
4. 보호자가 있는 6세 미만의 어린이 또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경로우대증이나 주민등록증을 휴대한

자

5. 각급학교 학생체육대회 개최시 해당학교 교사와 학생 및 전국체전, 국제경기 또는 국내 주요경기에 대하여 응원단으로 동원되는 인원

제16조(관람권의 금액) ①관람권의 금액은 사용자가 정하되, 그 금액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단, 관람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그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권의 금액에 미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권은 500원으로 한다. 다만, 청소년과 어린이는 200원으로 한다.

제17조(관람권의 예매) ①관람권을 예매하는 경우에는 예매금액의 20퍼센트(프로경기는 25퍼센트)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②관람권의 예매장소는 사용자 책임하에 선정하며, 사용자는 그 선정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한다고 인정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5. 경기장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관련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에게 손해를 미치더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설치하는 시설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회복하여야 한다.

제20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한 체육시설의 사용자는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21조(손해배상) ①사용허가기간 내에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중에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22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 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3조(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매표 및 검인) ①관람권은 당해 체육시설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관람권, 초대권, 입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행사종료 후 검인된 관람권의 잔표와 회수되는 관람권은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폐기하여 한다.

제25조(수수료)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물의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수료는 500원 상당의 부천시수입증지를 첨부하는 것으로 한다.

제26조(위탁관리) ①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사회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체육단체 또는 지방공사 등에 당해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위탁계약의 해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경기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기타 국가·도 또는 시의 시책과 경기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28조(준용규정) 제3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4조, 제18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은 위탁관리 수탁자와 체육시설의 사용자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체육시설전용사용료

(단위 : 원)

시설별	사용구분		체육경기		체육경기이외행사	
			평일	공휴일	평일	공휴일
시민운동장		주간	30,000	50,000	100,000	150,000
부천체육관	주 경기장	주간	60,000	90,000	220,000	330,000
		야간	90,000	135,000	330,000	495,000
	보조경기장	주간	20,000	30,000	40,000	60,000
		야간	30,000	45,000	60,000	90,000
테니스장		면당	10,000	20,000	12,000	24,000
비 고	○ 체육시설 사용에 따른 전기, 난방,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은 별도 징수 ○ 조기 사용료는 주간 사용료에 준하며 토요일은 공휴일에 준함 ○ 기타 체육시설은 시민운동장 및 부천체육관의 보조경기장 경우를 준용 ○ 체육진흥기금은 별도임					

(별표 2)

연 습 사 용 료

(단위 : 원)

경기장별	사용구분	기 준	사 용 료	
			개 인	단 체
시민·운동장		1인 2시간	500	300
부 천 체육관	실내체육관	1인 2시간	2,500	2,000
	보조경기장	1인 2시간	1,000	800
테니스장	면 당	1인 2시간	1,500	1,200

○ 단체는 동일 소속팀의 10인 이상

○ 축구는 팀구성 인원이 16인 이하일 때 16인으로 연습사용료 계산

○ 테니스장의 월 사용료는 25,000원을 징수함

○ 육상 경기장(트랙) 워밍업장, 보조경기장에서 초·중·고 및 도·시 대표선수단의 강화훈련은 무료(무료사용자는 필히 허가를 득하여 사용하되 1회 사용허가는 5일 이내로 한정)

○ 체육진흥기금은 별도

(별표 3)

방 송 사 용 료

(단위 : 원)

구 분			T V		라 디 오	
			국 외	국 내	국 외	국 내
중계방송	체육 경기	시민운동장	80,000	40,000	40,000	20,000
		실내체육관	60,000	40,000	40,000	20,000
	체 육 이 외 행 사		120,000	120,000	60,000	60,000
녹화촬영	녹화 또는 녹음		30,000	20,000	20,000	10,000
	축구 또는 행사촬영		60,000	40,000	40,000	20,000
비 고	○ 프로경기 중계방송료는 당해 체육시설 기본방송료의 2배 징수 ○ 방송료는 주최측에서 부담한다. ○ 카메라 및 뉴스보도용은 무료					

(별표 4)

상 행 위 사 용 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요 금	
		주 경기장	기 타
영 화 촬 영	주 간	100,000	100,000
	야 간	150,000	150,000
에드벌룬 등의 게양에 의한 광고	1일 1개	5,000	5,000
게시부착 광고물(㎡당)	연 간	500,000	350,000
	5일 이내	60,000	40,000
	1일 초과	10,000	10,000
진열, 전람광고물(3m 이내)	1일 1개	50,000	30,000
프로그램 선전책자 판매	판매부수 1부당 가격	판매액의 10%	판매액의 10%
기타 물품 대여(판매대여)	매출금액 - 원가	이익금의 20%	이익금의 20%
비 고	피켓 1회 1개, 전단 1,000매당 각 1,000원		

(별표 5)

부 속 시 설 사 용 료

(단위 : 원)

구 분	산 출 기 초	비 고
라이트시설	기본료(40,000원)+(월기본료×일/30)+실전기사용료	
전기·조명등	기본료(10,000원)+(월기본료×일/30)+실전기사용료	
냉·난방	기본료(50,000원)+(월기본료×일/30)+실사용전기유류고시가격	
음향시설	기본료(50,000원)+마이크사용료(1개당 5,000원)	
스코어판	1일 1회 10,000원+전기사용료(추가시 1게임당 5,000원)	
농구골대	1게임당 50,000원	
샤 워 실	1일 1회 기본료(20,000원)+(전기사용료)	
전 광 판	기본료 40,000원, 단 영상부문 포함하여 사용시에는 1회 100,000원을 추가 징수하고, 녹화 요구시에는 녹화비 1일 100,000원을 별도 징수	

- 전기, 난방 및 상·하수도요금은 계량기 등에 의거 사용량을 측정하여 일괄 징수하며, 계량기 등에 의한 측정이 어려울 경우 전월 공공요금 사용료를 기준으로 사용료 산출(전월 공공요금/30일)
- 관람수입이 있는 행사 및 경기에는 스코어판 및 농구골대 등 필수 부속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